

# 안 내 문

1. 힐스테이트 소사역(아파트) 및 힐스 에비뉴 소사역(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수분양자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2. 분양공급계약서 제4조(할인료, 연체료 및 지체보상금) (2)항과 관련하여 당초 연체요율 계(연 6.18%)에서 붙임과 같이 한국은행 가중평균금리(가계대출, 신규취급액 기준)증가로 인하여 변경 연체료율 계(연8.34%)으로 재산정 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서면 안내드립니다.

3. 아울러, 변경된 연체료율은 중도금 미납에 따른 연체 세대(호)에 해당됨으로, 정상적으로 납부 하신 세대(호)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1) 연 6.18% -> 연 8.34%(변경)

구분		예금은행 가중평균여신금리(1)	가산금리(2)	연체요율 계(1)+(2)
변경전	연체요율	연 3.18%	연 3.00%	연 6.18%
변경후	연체요율	연 5.34%	연 3.00%	연 8.34%

2) 변경된 연체료율 적용시기 : 2023년 1월 10일

4. 수분양자님들께서는 위 내용 및 아래 내용 참조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분양사무실 032-683-8075 번호로 전화 문의 부탁드립니다.

붙임 : 1. 2022년 10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한국은행) 1부.

2. 분양공급계약서 제4조(할인료, 연체료 및 지체보상금) 관련 조항 1부.

< 붙임 >

## 2022년 10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 I.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 2022년 10월중 신규취급액 기준 저축성수신금리는 연 4.01%로 전월대비 0.63%p 상승, 대출금리는 연 5.26%로 전월대비 0.55%p 상승
  - (저축성수신금리) 순수저축성예금 0.62%p 상승, 시장형금융상품 0.78%p 상승
  - (대출금리) 기업대출 0.61%p 상승, 가계대출 0.19%p 상승
  - 대출금리와 저축성수신금리 차는 1.25%p로 전월대비 0.08%p 축소
- 2022년 10월말 잔액 기준 총수신금리는 연 1.92%로 전월말대비 0.26%p 상승, 총대출금리는 연 4.38%로 전월말대비 0.26%p 상승
  - 총대출금리와 총수신금리 차는 2.46%p로 전월수준 유지

###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연 %, %p)

		2020.12	2021.12	2022.8	2022.9	2022.10 <sup>P</sup>	월중 등락
신규 취급액 기준	저축성수신금리(A)	0.90	1.70	2.98	3.38	4.01	0.63
	- 순수저축성예금	0.90	1.67	2.91	3.35	3.97	0.62
	- 시장형금융상품	0.95	1.82	3.23	3.49	4.27	0.78
	대출금리(B)	2.74	3.25	4.52	4.71	5.26	0.55
	- 기업대출	2.73	3.14	4.46	4.66	5.27	0.61
	· 대기업대출	2.51	2.86	4.23	4.38	5.08	0.70
	· 중소기업대출	2.89	3.37	4.65	4.87	5.49	0.62
	- 가계대출	2.79	3.66	4.76	5.15	5.34	0.19
	· 주택담보대출	2.59	3.63	4.35	4.79	4.82	0.03
금리차(B-A)	1.84	1.55	1.54	1.33	1.25	-0.08	
잔액 기준	총수신금리(C)	0.75	0.83	1.48	1.66	1.92	0.26
	총대출금리(D)	2.80	3.04	3.91	4.12	4.38	0.26
	금리차(D-C)	2.05	2.21	2.43	2.46	2.46	0.00

주 : p는 잠정치

## ‘힐스테이트 소사역’아파트 및 힐스에비뉴 소사역(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공급계약서

### 제4조(할인료, 연체료 및 지체보상금)

(2)“을”이 계약금, 중도금 또는 잔금의 납부를 지연하여 납부일이 경과되었을 때에는 그 경과일수에 대하여 아래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연체료를 가산 납부하여야 한다. 단, 계획된 공사 일정이 당초 중도금 납부일정보다 현저히 늦어지는 경우 “갑”은 “을”과 합의하여 위 중도금 납부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구분	예금은행 가중평균여신금리(1)	가산금리(2)	연체요율 계(1)+(2)
연체요율	연 3.18%	연 3.00%	연 6.18%

※상기 연체 금리는 한국은행이 매월 발표하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가계대출, 신규취급액 기준, 2021년 9월 3.18%)와 가산금리 3%(2018.4.30. 대부업법 시행령에 따른 연체이자율 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를 합산하여 산정된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전 항의 경우 경제사정의 변경 등으로 합산한 연체요율이 공급계약 체결시점에 비추어 연2% 포인트 이상 증감이 있을 때에는 "갑"과 "을"은 그 증감된 연체료율을 적용하여 연체료를 산정한다. 다만, "갑"이 합산 연체료율의 연2%포인트 이상 증가를 이유로 새로이 연체료를 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을"에게 그 사실을 서면 통지한 이후부터 이를 적용한다.

## ‘힐스테이트 소사역’ 아파트 발코니확장 및 유상옵션 계약서

### 제2조 연체료 및 지체보상금

(1)“을”이 제1조의 약정 납부일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경과일수에 따른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아파트공급계약서상의 동일한 연체료율을 적용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갑”은 입주시까지 발코니확장, 기타 유상옵션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이미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아파트 공급계약서상의 동일한 연체료율에 의거 “을”에게 지체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잔여대금에서 공제한다.